

주요심결사례

2002. 1. 17.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14개 감염성폐기물처리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전(2001독관2672)</p>	<p>한국환경개발(주), (주)한국클린시스템, (주)덕원산업, (주)중부그린, 연합환경(주), (주)위생개발, (주)세신, (주)삼우그린, 창광실업(주), 정삼정(경서산업사 대표), (주)이영환경, 덕삼산업(주), (주)하나산업, (주)뉴그린 환경은 2001. 2월부터 같은 해 4월 기간동안 한국감염성 폐기물처리공제조합 이사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감염성폐기물처리비를 600원/kg으로 인상 및 유지하기로 합의, 감염성폐기물처리업 시장에서 사업자들과의 경쟁을 본질적으로 제한하여 동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1호 위반</p>	<p>과징금 납부 (주)한국클린시스템: 6,541천원 한국환경개발(주) : 3,118천원 (주)덕원산업 : 1,660천원 (주)중부그린 : 977천원</p>
<p>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전(2001독관 2555)</p>	<p>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는 1997. 4. 시장개설 이후 구리청과(주) 등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등으로부터 농수산물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보증금을 징수함에 있어, (구)농안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증금납부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와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1998. 3. 30. 도매시장법인인 구리청과(주)에서 보증서로 납부토록 해줄 것을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였고, 1999. 1. 1~2001. 7. 31. 기간중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들에게 거래실적 감소·상장예외품목 취급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현금으로 보관 중인 거래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하면서 보증금 예치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1999. 1. 1~2001. 7. 31. 기간중 자기 소유의 청과물동, 수산물동, 기타 부속건물내의 점포·사무실 및 편의시설(식당, 약국 등)을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편의시설 임차인 등에게 임대하면서, 시설사용료·임대료·관리비 등을 징수하는 이외에 전력간선교체·배수펌프·소방설비 보수공사 등 77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자신이 공사비 전액을 부</p>	<p>과징금 납부 : 58백만원</p>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담한 8건을 제외하고 69건의 수선공사비 230백만원 중 213백만원 상당을 임차인에게 사용면적비를 등에 따라 부담시켰고, 또한 경매장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2000. 3. 9.자로 기존 3개 도매시장법인중 하나인 고려청과(주)가 법인지정이 취소됨에 따라 고려청과(주)가 사용하고 있던 경매장 면적을 나머지 2개 도매시장법인인 농협공판장·구리청과(주)에게 추가로 배정하여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0. 3.~2001. 4. 기간중 도매법인 농협공판장 및 구리청과(주)에 대하여 면적대비 시장사용료를 일방적으로 인상 부과하는 등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위반</p>	
<p>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2001부사2554)</p>	<p>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은 1999. 4. 15.~2000. 4. 17. 기간동안 교통안전시설물 보수정비공사 등 4개 공사건과 관련, (주)대성헨스개발 등 3개 사업자들과 도로보수공사(3건) 및 자재납품(1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약체결시 정한 하자담보기간과 관계없이 하자보수 또는 변상토록 서약하는 준공계 또는 준공검사원을 징구하는 등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위반</p>	
<p>지방공사경상남도마산의료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2001부사2553)</p>	<p>지방공사경상남도마산의료원은 1999. 1. 1.~2001. 9. 13. 기간동안 삼원약품, 거성의료기상사 등 36개 의약 및 의료장비 관련 업체들로 부터 의약품, 의료장비 등을 구매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대금지급기일로부터 평균 105일~135일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1999. 1. 1.~1999. 12. 31. 기간동안 의료법인 이원의료재단에게 임상병리검사를 의뢰하면서 동 수탁검사용역계약서에 “보험청구 삭감분은 이원에서 배상한다”는 조항을 설정, 동 재단에서 실시한 임상병리검사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과잉진료로 판단되어 삭감된 임상병리검사보험수가 삭감분을 2000. 5. 31. 환수하였고, 2000. 1. 1.~2001. 9월 현재까지 의료법인 삼광의료재단에게 위와 동일한 이유로 일부 금액을 부당하게 환수하였으며, 또한</p>	

주요심결사례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1999. 1. 1.~2001. 6월말 기간중에 중앙의료기 등 8개 의료기상사로부터 수술 및 처치 재료를 납품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같은 이유로 삭감된 수술 및 처치재료 보험수가 삭감분을 동 의료기상사들로부터 1999. 5. 12.~2001. 5. 24. 기간중 환수하는 등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위반</p>	
<p>서울특별시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2001소기2422)</p>	<p>서울특별시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은 1995. 1. 21.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신고제에서 자율요금 체제로 전환된 이후에 1998. 2. 장의자동차요금표를 작성, 자신의 구성사업자에게 배포·이용토록 하는 등 구성사업자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장의자동차운송요금을 자신이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여 동 요금을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장의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1호 위반</p>	<p>경쟁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서울시 지역 1개 일간지 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지방공사강남병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2001독관2545)</p>	<p>지방공사강남병원은 1998년도 환자진료용 의약품 792종에 대한 일반경쟁 단가입찰을 4차례(98. 4. 17, 5. 20, 5. 29, 7. 4)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염산티로프라미드 100mg 등 14개 품목이 유찰되자 기존 거래업체인 3개의 약품도매상과 수의계약으로 의약품 공급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주량의 일정비율(15~20%)에 따라 의약품을 기증하도록 요구하여 1998. 4. 1.~1999. 3. 31. 기간동안 99,342천원 상당의 의약품을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1997. 8. 27.~2001. 8. 26.까지 국제도로(주)와 병원 주차장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함에 있어 자신의 영안실 증축공사로 인해 임차인의 영업수단인 주차공간 19면(총103면)을 1997. 11. 28.~2000. 7. 31. 기간동안 공사자재 적치 등의 용도로 무단사용 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이익제공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위반</p>	<p>과징금 납부 : 93백만원</p>